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특허청 동호회 운영규정」

◇ 제·개정 이유

- 직원 상호간 친목향상 도모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형성
- 일부 동호회에 퇴직자도 회원으로 참여 및 활동하여 퇴직자의 영향력 행사 요인으로 인식하는 문제 발생

◇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

- (목적) 직원들 상호간 친목향상 도모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형성
- (정의) “동호회”란 특허청 직원들이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, 취미,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

나. 동호회 총괄 관리부서 및 역할

- (관리부서 및 역할)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하고 등록, 취소 및 지원 업무 수행

다.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

- (등록신청) 신청서 및 서류(회칙, 회원명부 등)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
- (등록기준) 회원(재직 특허청 직원)수 10명 이상, 특정직급 및 부서 편중 금지, 같은 종류 동호회 2개 초과 등록 불허

라. 동호회 지원기준 및 지원제외 동호회 규정

- (지원기준)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활동비, 대외활동비 지급

* 직무관련 퇴직자와 함께하는 행사는 동호회 지원금 지급 제외

- (지원금 집행) 지원금은 활동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
- (지원제외) 설립 후 활동을 하지 않거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동호회는 지원 제외